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7 선고 2015나25138(본소), 2015나25145(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

##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7 선고 2015나25138(본소), 2015나25145(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3가단57031 판결

##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B

2. C

변론 종결 2016. 7. 13.

판결 선고 2016. 7. 27.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3가단57031(본소), 2014가단2335(반소)

판결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취지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1)항과 나 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제1의 가 1) 서울 성동구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건물 9㎡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건물 7㎡를 철거하고,"

"제1의 나 1) 서울 성동구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8, 17,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건물 13㎡를 철거하고,"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서울 성동구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건물 9㎡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건물 7㎡를 철거하고, 36,441,200원을 지급하고, 2015. 4. 17.부터 위 '가'와 '나'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33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서울 성동구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8, 17,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건물 13㎡를 철거하고, 31,246,300원을 지급하고, 2015. 4. 17.부터 위 '다'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2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서울 성동구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에 관하여 2005. 3.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에게 서울 성동구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8, 17,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에 관하여 2010. 5.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24,296,876원과 2015. 4. 17.부터 위 '가'와 '나'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231,3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20,833,219원과 2015. 4. 17.부터 위 '다'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82,8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1)항 2, 3행 중 "주위적으로"를 삭제하고, 3행 중 앞쪽의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을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 각 지상건물"로 고치고, 6부터 9행 중 "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의 2005. 5. 16.부터 2015. 4. 16.까지 대지로서의 임료 합계 36,441,200원을 지급하고, 2015. 4. 17.부터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를 삭제하고, 2)항 2행 중 "주위적으로"를 삭제하고, 3행 중 앞쪽의 "이 사건 '다' 부분"을 "이 사건 '다' 부분 지상건물"로 고치고, 6부터 8행 중 "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다' 부분의 2005. 5. 16.부터 2015. 4. 16.까지 대지로서의 임료 합계 31,246,300원을 지급하고, 2015. 4. 17.부터 이 사건 '다'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를 삭제하고, 나 3)항 1행 중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이 사건 '가', '나' 부분 각 지상건물"로, 4행 중 "이 사건 '다' 부분"을 "이 사건 '다' 부분 지상건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취지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1)항과 나 1)항을 "제1의 가 1) 서울 성동구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건물 9㎡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건물 7㎡를 철거하고,"와 "제1의 나 1) 서울 성동구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8, 17,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건물 13㎡를 철거하고,"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고승일**

**판사김선아**

**별지**